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등〉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32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적 검토	2
2.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대한 표시의무(안 제43조의2 신설 등)	6
3. 사람 대상 인공지능 생성물의 대상자 동의 없는 편집 등 금지(안 제 44조의7 제1항 제1호의2 등)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8.

다.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함.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의 진위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딥페이크 정보를 명예훼손, 성범죄,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는 2023년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검증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인증 및 워터마크 지침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¹⁾은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음²⁾.
- 또한 유럽연합은 2024년 3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생성

1)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인플렉션, 앤스로픽

2) 이승환,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국회미래연구원, 23-15호.

• 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킨 바 있음³⁾.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⁴⁾에서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하도록 하고 있음⁵⁾.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조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할 수 있는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⁶⁾.

3) 4.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범죄 행위를 탐지, 방지, 조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콘텐츠가 명백히 예술적, 창의적, 풍자적, 허구적 유사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는 그러한 생성 또는 조작된 콘텐츠를 저작물의 전시 또는 향유를 방해하지 않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후략]

4) 임시번호 DD20131

5)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개별법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하거나 편집물등·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⁸⁾.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 6)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8)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534호, 2025.6.4. 시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⁹⁾,
정보통신망에서의 딥페이크 정보 유통을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
화상·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
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딥페이크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법률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법률 간 중복이나 모순·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개별 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함.

9)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
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안 제43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인공지능 생성물마다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소프트웨어에 구현하여야 함(안 제43조의2 제1항).
-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제1항에 따른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76조제3항제4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u>는 제작 또는 편집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생성물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소프트웨어에 구현하여야 한다.</u> <u>②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u>

현행	개정안
<u>4의2. ~ 4의4.</u> (생략)	<u>4의3. ~ 4의5.</u> (현행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와 같음)
5. ~ 25. (생략)	5.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의 의무

- 안 제43조의2 제1항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가 후술할 표시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정의하면서,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
· 이미지 ·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
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사실조사 · 시정명령 ·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작 · 공급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소프트웨어 제작 · 공급자의 의무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안에 의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임.

□ 정보유통자의 의무

- 첫째,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실제 의무이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43조의2 제2항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런데 인공지능 생성물이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접 정보를 생성한 자가 아닌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를 편집하여 유통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의무 이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 전체를 표시의무의 대상으로 하는데,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또는 예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 방송·광고 등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 정도 또한 단순 보정부터 실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진·영상등의 구현까지 다양한 만큼,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가령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영상 일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보정한 경우까지도 표시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 콘텐츠의 일부로서 당연히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알 수 있는 경우까지도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표시의무가 이용자의 몰입을 저해할 우려 등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이 사실로 오인됨에 따른 법익 침해 및 사회적 영향,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대안)」은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

-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의 의무) 안전한 인공지능 생성물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글·문자 생성에도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표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제정법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정보유통자의 의무)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 단순 재유통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의무자를 직접 콘텐츠를 제작·편집하는 등 가상 정보임을 알 수 있었던 자로 한정하고, 미용 목적의 경미한 활용 또는 가상정보라는 사실이 명확한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표시 필요성이 낮은 정보도 있으므로, 표시 의무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표시방법에는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방법도 존재하므로,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적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반정보에 대한 직권표시나 접속제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표시를 삭제·훼손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정보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벌칙·과태료) 표시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불법·유해성이 없는 정보임에도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 산업계 등에서 표시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검토가 진행 중이고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도 다수 발의 중으로, 표시의무에 대해서는 관련법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 외 개정안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정보유통자의 의무) 정보유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단순히 게시하는 경우 등 다수의 경우에 정보유통자가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정보의 2차 게시자 또한 동일한 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2차 게시자가 표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최초 게시자가 표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 표시가 변경·삭제되는 경우에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의견임.

- (벌칙·과태료) ‘정당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요건만으로 과태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자의적 법집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정보까지 인공지능 생성물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고, 포괄적인 표시의무로 인해 인공지능산업 및 관련 콘텐츠 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표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 경우 악의를 가진 이용자가 이를 제거하고 이용할 가능성, 표시 범위나 방법에 대한 기술적 불완전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인공지능 생성물을 공유받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제재가 우려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입법 규제보다는 기존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규제 관련 조항은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사람 대상 인공지능 생성물의 대상자 동의 없는 편집 등 금지 (안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2 등)

가. 개정안 요지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2).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2조 제1항 제1호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민전의원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u>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현행	김민전의원안
2. ~ 5. (생략)	<u>가공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따른 법익 침해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함.
 -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됨¹⁰⁾.
- 개정안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가공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대상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사람 대상 인공지능 생성물 중에는 악의적 목적이 없거나 대상자의 권리침해와 무관한 정보도 있는데, 이 경우 비록 대상자의

10) 현재 2008. 11. 27. 선고, 2007헌가24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제작하거나 유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가령 사람이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부 편집하여 뉴스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려움.

○ 어떠한 행위가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익을 침해·위태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¹¹⁾,

사람 대상 인공지능 생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함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이 무엇인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람 대상 인공지능 생성물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¹²⁾,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¹³⁾,

11) 오영근·노수환, 「형법총론」, 박영사, 2024, p.75-77.

12)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3)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구체적인 법익침해를 명시하지 않고 사람 대상 인공지능 생성물 편집·합성·가공 일체를 처벌하는 경우 법률 간 중복·충돌의 우려도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익침해에 대한 고려 없이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인에 대한 보도·논평 등 정당한 사용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통 금지 정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처벌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이 명예훼손 등 위법성 여부와 무관하고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도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개정 성폭력처벌법과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를 판단하기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될 우려가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피해를 줄 의사가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나
인공지능 기술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동의를 없는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